

의안번호	제 121 호
의 결 연 월 일	2007년 월 일 (제 회)

충청북도자연학습원운영및위탁관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발 의 자	최광옥 의원 외 7인
발의연월일	2007년 6월 4일

## 충청북도자연학습원운영및위탁관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121
----------	-----

발의연월일 : 2007년 6월 4일

발 의 자 : 최광옥 의원의외 7인

### □ 제안이유

조례중 「위탁계약의 취소」 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, 일부 불합리한 조문을 현실에 맞게 정비 하고자 함

### □ 주요내용

가. 위탁계약의 취소사유 구체적 명시 (안 제16조)

- “학습원의 유지관리를 소홀히 하였을 때”를 ⇒ “학습원의 유지관리 업무를 소홀히 하여 재산상 중대한 손해가 발생 하였을 때”로 개정

나. 일부 불합리한 조문 정비

- “체육청소년과장”을 ⇒ “충청북도지사”로 개정

### □ 참고자료

- 관계 법령 : 따로붙임

## 충청북도자연학습원운영및위탁관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자연학습원운영및위탁관리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 “충청북도자연학습원운영및위탁관리에관한조례”를 “충청북도자연학습원 운영 및 위탁관리에 관한 조례”로 한다.

제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- ①충청북도지사(이하 “도지사”라 한다)는 매년 학습원의 교육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.

제16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1. 학습원의 유지관리 업무를 소홀히 하여 재산상 중대한 손해가 발생 하였을 때

제6조제2항·제9조제2항중 “과장”을 “도지사”로 하며, 제6조제3항 내지 제4항·제9조제3항·제11조제1항중 “과장은”을 “도지사는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<u>충청북도자연학습원운영및위탁관리에 관한조례</u></p> <p>제5조(운영계획)①<u>체육청소년과장</u> (이하 “과장”이라 한다)은 매년 학습원의 교육운영계획을 수립하여 <u>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</u></p> <p>② (생략)</p> <p>제16조(위탁계약의 취소) <u>도지사는</u> 수탁관리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.</p> <p>1. <u>학습원의 유지관리를 소홀히 하였을 때</u></p> <p>2.~4. (생략)</p>	<p><u>충청북도자연학습원 운영 및 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</u></p> <p>제5조(운영계획)①<u>충청북도지사</u> (이하 “도지사”라 한다)는 매년 학습원의 교육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.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16조(위탁계약의 취소) ……………  ……………  ……………  ……………</p> <p>1. <u>학습원의 유지관리를 소홀히 하여 재산상 중대한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</u></p> <p>2.~4. (현행과 같음)</p>

## 관계법령 발췌

### □ 지방자치법

제15조(조례)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. 다만,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.

### □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

제12조(복지여성국) 복지여성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.

6. 영유아 보육·아동·청소년 복지에 관한 종합기획 및 조정

### □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

제12조(복지여성국에 두는 과)①복지여성국에 복지정책과, 여성정책과, 경노재활과, 청소년아동과, 보건위생과를 둔다.

②~⑥(생략)

⑦청소년아동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.

2. 청소년시설의 확충 및 관리에 관한 사항

3. 청소년시설업의 등록 및 지도감독